

# 特 報

● 상공부고시 제89-6호 ●

## 1989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1989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3. 2

상 공 부 장관

### 1. 운용규모

(단위 : 억원)

부 문 별	규 모
1. 산업기술향상	775
○ 시제품개발	485
— 기계부문	295
— 전자부문	190
○ 신소재개발 (섬유 신소재)	110 (45)
○ 공동취약기술개발	50
○ 소프트웨어개발	50
○ 차세대기억소재개발	80
2. 합리화 시설개체	100
계	875

## 2. 부문별 운용요령

### 1. 시제품 개발사업(기계 및 전자부문)

가. 응자대상 : 기계류, 산업용전자기기 및 동부품의 시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제외. 이하같음), 중견기업(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를 제외한 기업. 이하같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나. 응자우선부문

- 1) 상공부장관이 기계류 부품 및 소재개발대 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 2)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단, 상공부장관이 지원하지 않은 기술개발 과제는 제외)
- 3)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사업
- 4) 계열화추진을 위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모기업 단위로 구성된 수급기업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다. 신 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기계부문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자부문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 3) 신청구비서류(이하같음)
  -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2부
  - 나) 사업계획서 1부
  - 다) 기타 참고자료

## 2. 신소재개발(섬유신기술개발 포함)

가. **응자대상** : 신소재 및 신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나. 응자우선부문

- 1) 상공부장관이 기계류 부품 및 소재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 2)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 과제(단, 상공부장관이 기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는 제외)
- 3)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사업
- 4) 자체기술연구소 또는 자체시험연구설비를 갖춘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

### 다. 신 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섬유신소재 부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신소재 및 기타부문 : 한국생산성본부

## 3. 공동취약기술개발

가. **응자대상** : 금형, 공구, 도금, 열처리, 주단조, 용접, 계량기술을 개선(개발)하거나 동 개선(개발)기술에 의한 시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나. 응자우선부문

- 1) 상공부장관이 기계류 부품 및 소재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 2)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단, 상공부장관이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는 제외)
- 3)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사업

4) 계열화추진을 위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모기업 단위로 구성된 수급기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5) 공업진흥청등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개발 사업

### 다. 신 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4. 소프트웨어 개발

가. **응자대상** : 정보화사업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나. 응자우선부문

- 1) 중소기업이 자사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하는 경우
- 2) 산업의 정보화 및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자동화(OA), 공장자동화(FA) 및 전산망(Network)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3) VAN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

### 다. 신 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5. 차세대기억소자개발사업(초고집적 반도체개발사업)

가. **응자대상** : 차세대기억소자(초고집적 반도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나. 신 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신청경유기관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6. 합리화사업

### 가. 용자대상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개체 및 시설보완투자(보완투자액은 개체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음)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섬유업종에 한함)

### 나. 용자우선부문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 발굴지원요령에 의거 발굴된 중소기업의 시설개체

### 다. 신청

- 1) 신청기간 : '89. 9. 30까지
- 2) 취급기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Ⅲ. 용자조건 및 취급은행

### 1. 용자조건

#### 가. 산업기술향상

- 1) 용자금리 : 연 6.5%
- 2) 용자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기간 포함)
- 3) 동일인당 한도 : 3억원 이내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인 경우 5억원 이내, 차세대기억소자개발사업은 제한없음)
- 4) 용자비율 :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80% 이내  
중견기업 : 소요자금의 70% 이내
- 5) 자금의 지원범위
  - 가)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및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 견본비 및 재료비
    - 시험검사비
    - 연구인력 교육 연수비
    - 기술지도비
    - 위탁연구개발비
  - 나)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구입비
  - 다) 기술도입비
  - 라) 외국기술인증 획득비

마)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의 건설 및 운전비

### 나. 합리화사업

- 1) 용자금리 : 연 7%
- 2) 용자기간 : 8년 이내 (3년 거치기간 포함)
- 3) 동일인당 한도 : 3억원 이내
- 4) 용자비율 :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80% 이내  
중견기업 : 소요자금의 70% 이내
- 5) 자금의 지원범위

○ 합리화자금에 의한 개체시설의 종류와 폐기시설 및 개체시설의 비율은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2. 용자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장기신용은행

## Ⅳ. 용자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보

1. Ⅱ의 각 취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운용 및 사후관리 시행세칙에 의거 공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또는 선정지침)을 작성, 동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용자대상사업자(차순위사업자 포함)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공부장관은 각 취급기관에서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여 용자 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한다.

3. 상공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용자대상사업자의 용자대상사업 및 용자금액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이 용자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한다.

## V. 사후관리

1. Ⅱ의 각 취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운용 및 사후관리시행세칙에 의거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 및 용자취급은행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기금을 용자받은 자는 본 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을 취급기관(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공부장관은 용자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기금대출을 포기하였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확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용자취급은행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는 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시설자금 최고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당초 대출일로부터 자금회수당일까지 징수하며,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Ⅵ. 수수료 징수

각 취급기관은 공업발전기금의 운용 및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자대상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상공부고시 88-49호('88.11.18)는 폐지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한 용자금리는 '89년도에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에 대하여부터 적용되며 '88년말 이전에 선정된 용자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 <※>

###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 案 發明品企業化推進 審議委員會 運營 內

特許廳告示 第88-4호에 의거 本會는 發明의 企業化 過程을 積極 支援함으로써 優秀發明의 尙장화를 防止함과 동시에 發明意慾을 振作시켜 技術開發을 통한 國家 産業發展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發明品 企業化推進審議委員會를 아래와 같이 運營 하고 있어오니 發明人들의 많은 活用바랍니다.

### ◎ 아 래 ◎

#### 1. 目的

發明의 企業化 過程을 積極 支援함으로써 優秀發明의 尙장화를 防止함과 동시에 發明意慾을 振作시켜 技術開發을 통한 國家 産業發展에 寄與함

#### 2. 機能

- 1) 發明의 企業化 可能性 검토
- 2) 企業化支援機關(團體)과의 연계를 위한 推薦
- 3) 發明需要業體와 연계를 위한 技術評價 및 實施斡旋

#### 3. 支援對象

- 1) 特許法,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登錄되었거나 出願중인 發明및 考案
- 2) 소멸된 發明및 考案

#### 4. 申請節次

- 1) 所定の 申請書 작성에 의거 年中수시로 申請 接受함
- 2) 專門機關에 發明의 技術評價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申請者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함

#### 5. 評價方法

- 1) 技術性 및 關聯技術에의 파급효과
- 2) 市場性(시장규모, 타상품과의 대체성 등)
- 3) 製品의 추정예정가격 및 수지전망
- 4) 輸入代替 및 輸出展望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 (557-1077. 8)로 問議바랍니다.